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2.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295

### I. 건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병도 의원외 22명
- 나. 제안일 : 2022. 10. 17.
- 다. 회부일 : 2022. 10. 21.

#### 2. 주문 및 제안이유

##### 가. 주문

-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에 치우쳐 있는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범죄 대응방안으로 피해자보호 강화 및 지원으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

##### 나. 주요내용

- 우리의회는 지난 9.22.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피해자 처벌의 필요성과 보복범죄의 방지를 건의한 바 있음.

- 이후 여러 법률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강화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함.
- 이에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개선, 국선번호인제도 도입, 피해자불이익 금지 신설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 이송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건의안의 내용

- 동 건의안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가해자 처벌위주로 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임.

### 2 주요사항 검토

#### □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관련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총 21개 조문으로 3개의 장(총칙,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경우 위반시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제3장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규정을 다루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춘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5317호)과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5426호), 2개가 계류 중인 상태임.

####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강화 및 피해자 고지절차 관련

- 현행 「스토킹처벌법」 법률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sup>1)</sup>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긴급응급조치 한 경우에만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음.
- 스톱킹범죄는 지속·반복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만큼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통지 뿐만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 등에 대한 통지가 필요해 보임.

#### □ 국선변호인 지원제도 도입 관련

- 건의안은 스톱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 지원제도의 신속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삭제)

- 국선변호인 지원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최초로 도입되었음.
- 보복이나 2차 피해 때문에 법정 출석을 꺼리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국선변호인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3 종합 의견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처벌 위주의 법률로 피해자에게 폭넓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 2022. 10. 19.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sup>2)</sup> 한 바,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범죄 전단계의 스토킹행위의

2)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10.19.

상대방 등 예방적 차원의 추가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 9. 28. 제정하여 2022. 10. 17. 공포·시행하고 있어 상위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보다 안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됨.